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43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조승환 · 정성국 · 김소희
이성권 · 서지영 · 김상훈
곽규택 · 김승수 · 유용원
김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과의 간격이 넓어 후보자로서는 법상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과의 간격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의 사전투표는 실무상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의 선거인이 하는 ‘관내사전투표’와 관할구역 이외의 선거인이 하는 ‘관외사전투표’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현행 사전투표에 관한 규정에서는 ‘관내사전투표’나 ‘관외사전투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규정 방식도 관외사전투표 위주로 투표용지 교부 및 투

표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사전투표의 구분 및 실제 투표 과정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에 대하여 각종 부정 의혹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사전투표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관할 구역의 선거인과 관할 구역 외의 선거인으로 구분한 사전투표자 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변경하고, 현행 사전투표에 관한 규정을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로 구분하며, 사전투표 현황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사전투표에 관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투표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서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변경함(안 제148조제1항).

나. 사전투표를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로 구분하고, 사전투표함을 관내사전투표함과 관외사전투표함으로 구분하여 조문을 정리함(안 제151조제3항, 제155조제4항, 제158조, 제176조).

다.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자 현황을 매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까지 관할 구역의 선거인 중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의 현황을 집계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171조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일”을 “3일”로 한다.

제151조제3항 중 “투표함(이하 “사전투표함”이라 한다)과”를 “관내사전투표함·관외사전투표함과”로 한다.

제15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사전투표함”을 “관내사전투표함·관외사전투표함”으로 한다.

제155조(투표시간)

제15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를 “선거인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투표용지와”를 “관외사전투표를 위하여 투표용지와”로, “사전투표함”을 “관외사전투표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전단 중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을 “관외사전투표함의 경우 관외사전투표함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을 “관내사전투표함의

경우 관내사전투표함을”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사전투표함”을 “관내사전투표함”으로 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로 구분한다.

1. 관내사전투표: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거인이 하는 사전투표

2. 관외사전투표: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의 선거인이 하는 사전투표

이 경우 관외사전투표를 하는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한다.

⑤ 관내사전투표를 위하여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관내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10장에 제1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1조의2(사전투표 현황 관리) ①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자 현황을 매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자 현황은 관내사전투표를 하는 선거인과 관외

사전투표를 하는 선거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선거일 전까지 관할 구역의 선거인 중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 현황을 집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 현황에는 선거인별 사전투표일시 및 사전투표소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6조제1항 중 “사전투표”를 “관외사전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투표함”을 “관내사전투표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투표함”을 “관내사전투표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전투표함”을 “관내사전투표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투표기간 변경 및 사전투표 현황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제1항 및 제1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u>5일부터</u> 2일 동안 (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 ⑥ (생략)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 ---- <u>3일</u> ----- ----- ----- ----- ----- ----- ----- ----- ----- ----- ----- -----.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② (생략) ③ 사전투표소의 <u>투표함</u> (이하 “사전투표함”이라 한다)과 郵便으로 접수한 投票를 보관하는 投票函(이하 “郵便投票函”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내사전투표함 · 관외사전투표함과----- ----- ----- ----- ----- ----- -----

투표신고인수·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정한다.

④ ~ ⑨ (생략)

第155條(投票時間) ① ~ ③ (생략)

④ 사전투표소에서 投票를 開始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記票所內外의 異狀有無에 관하여 檢査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參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投票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55조(투표시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관내사전투표함·관외사전투표함-----

-----.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58조(사전투표) ① -----

-----.
이 경우 사전투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로 구분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후 단 신설>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

1. 관내사전투표: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거인이 하는 사전투표

2. 관외사전투표: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의 선거인이 하는 사전투표

② (현행과 같음)

③ -----

-----선거인에게-----
-----. 이 경우 관외사전투표를 하는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한다.

④ 관외사전투표를 위하여 투표용지와-----

[illegible]

⑤ 관내사전투표를 위하여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관내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⑥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
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
 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
 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
 여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
 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
 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
 유를 기재한다.

2.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
 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
 다.

⑦ · ⑧ (생략)

<신설>

1. 관외사전투표함의 경우 관외
사전투표함을-----

 -----.

2. 관내사전투표함의 경우 관내
사전투표함을-----

 --. -----관내사전투표함-----
 -----.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171조의2(사전투표 현황 관리)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區
·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郵
便으로 송부된 사전투표·거소
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
에는 당해 區·市·郡選舉管理
委員會의 政黨推薦委員의 참여
하에 이를 즉시 郵便投票函에
投入·보관하여야 한다.

①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 마감 후 사
전투표자 현황을 매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
투표자 현황은 관내사전투표를
하는 선거인과 관외사전투표를
하는 선거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선거
일 전까지 관할 구역의 선거인
중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 현황
을 집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
현황에는 선거인별 사전투표일
시 및 사전투표소명이 포함되
어야 한다.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

-----관외사전투표-----

-----.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u>사전투표함</u>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함의 봉합·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u>사전투표함</u>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u>사전투표함</u>은 開票參觀人의 參觀하에 選舉日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開票所로 옮겨서 一般投票函의 投票紙와 별도로 먼저 開票할 수 있다. ⑤ (생략)	② ----- ----- <u>관내사전투표함</u>----- ----- ----- ----- -----. ③ ----- ----- -----<u>관내사전투표함</u>----- ----- ----- ----- ----- -----. ④ ----- -----<u>관내사전투표함</u>----- ----- ----- ----- ----- -----. ⑤ (현행과 같음)
---	---